

※ 동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손님님에게 제공됩니다.

추가약정서 (폐업지원 대환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 (인)

주 소 :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추가약정”)합니다.

제1조(목적)

본 추가약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예정)에 따른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원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지원대상)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손님으로서 대출실행 이전까지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3조(사업자대출 신규 취급 제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원 취지에 따라 동 대출 이용 중에 당행 또는 다른 은행에서 신규사업자 개업 등에 의한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이 제한(주)되며,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신규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폐업지원 대환대출」 실행 전 기 이용중인 사업자대출은 제한하지 않음

제4조(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본인은 본 추가약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대출 이용 중에 당행 또는 다른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